

### 별첨3

##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

선정 항목	항목별 가중치	비고
<b>■ 일반 항목</b>	<b>90점</b>	
① 휴게 취약직종 근로자 종사 사업장 - 전화상담원(39912), 돌봄서비스 종사원(4211), 텔레마케터(5313), 배달원(922),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(941), 아파트 경비원(94211) 및 건물경비원(94212)	20점	사업장 정보조회(공단 ERP)와 신청서류(사업자등록증 등)를 통해 확인 <산재업종> (90101)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, (90104)기타의사업-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(중업종), (90102)위생 및 유사서비스업, (50105~50111)화물운수업.택배업.퀵서비스업, (90714)기타의사업-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<고용업종> (7599)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
② 고열·한랭·다습작업장 ※ 해당 시 증빙자료 제출	20점	안전보건규칙 제559조의 고열작업, 한랭작업, 다습작업이 있는 사업장에 한해 인정 ※ 고열작업의 경우 작업환경측정고열 실시 여부로 확인 ※ 한랭·다습작업의 경우 현장사진, 공정설명서 등으로 판단하며 투자계획서 사실여부 확인
③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을 하는 사업장 ※ 해당 시 증빙자료 제출	15점	(야간작업) 산인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4호에 해당하는 작업야간특검 실시여부로 확인
④ 사업장의 영세성	10점	10인미만 10점, 10~20인미만 5점
⑤ 근골격계, 뇌심혈관계 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병이 발생하였던 사업장	10점	최근 3년간(20~신청일) 산재승인된 사례에 한함
⑥ 고령근로자 수 - 만 55세 이상 근로자 수	최대 5점	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통해 확인 고령근로자* 1명당 1점 부여
⑦ 신규 설치 대상 사업장	5점	별첨2 보조지원품목 중 휴게실 신규설치(사업장 건축물 내부공간 내 적정면적에 휴게실 신규설치)
⑧ 공단 보조사업 최초 지원 사업장	5점	
<b>■ 자율활동 우수항목</b>	<b>10점</b>	
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* * ①노사문화우수기업 ②강소기업 ③일학습병행제 인정 사업장 ④NCS 컨설팅 우수사례 선정기업 ⑤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기업 ⑥일자리 으뜸기업 ⑦일터혁신 우수기업(인증) ⑧기업채용지원패키지 참여사업장 ⑨산학협력 우수기업 ⑩여름휴가분산 우수기업	최대 5점	각 1점씩 * 사업장에서 인증(포상) 등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
⑩ 공생협력 참여한 협력업체, KOSHA-MS 인증,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기업	5점	(공생협력) '22~'23년 참여업체에 한함 (위험성평가인정) 공단에서 인정한 것으로 인정기한 내일 경우에 적용
<b>계</b>		

※ 선정기준 점수가 동일할 경우 공통적용 항목 순번(①→②→③→④→⑤→⑥→⑦→⑧)으로 우선순위 적용 → 자율활동 우수항목(⑩→⑨) 항목별 우선순위 적용하고, 이후에도 동점일 경우에는 근로자수 적은 순으로 선정

※ 증빙자료 미제출 시 미적용

※ 투자계획 확인 등을 통하여 증빙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신청 및 자금결정 취소